#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53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서미화・김병기・이용선

이수진 • 박지원 • 고민정

김문수 · 김영환 · 김남근

권칠승·박홍배 의원

(11인)

#### 제안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음.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2024년 7월 19일부터 도입된 출생통보제 역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등록되지않은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들은 교육, 보건·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 인아동 인권보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에 따른 통보의무를 면제하며, 출생등록업무에 관한 정보 제공 요 청을 제한함(안 제6조).
- 다.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생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재함(안 제9조).
- 라.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승인 및 협의 절차를 도입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마.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 신청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의 요건ㆍ절차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사. 외국인아동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안 제20조).

아. 외국인아동 사망 시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 및 변동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외국인아동"이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 2.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란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설치된 관서와 외국 인보호소를 말한다.
  - 3. "출생등록"이란 출생의 사실을 출생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관장)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및 정정사항에 관한 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출생등록사무"라 한다)는 법무부가 관장한다.

- 제5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출생등록신청의 접수, 출생등록증명 서의 발급 및 기재사항 정정신청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과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6조(통보의무의 면제 및 정보 제공 요청등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78조 및 제81조에 따른 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없다.
- 제7조(출생등록 신청의 보장) ①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누구든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출입국사범 단속 등 외국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청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장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신청

제8조(출생등록신청 및 기재사항) ① 출생등록신청은 출생 후 90일 이 내에 출생등록신청서 및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그 외국인아 동이 체류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1. 외국인아동의 성명·성별 및 체류지. 국적
- 2. 출생 연월일시 및 장소
-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에 한한다)
- 4. 신청인의 성명·출생연월일·자격
- ③ 외국인아동의 성명은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가운데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⑤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을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 면
- 4. 부와 모의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혼인 중 출생자인 외국인아동을 부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제5항제4호에 따른 부의 신청을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생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대법원규칙"은 "법무부령"으로, "시·읍·면의 장"은 "시·군·구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0조(신청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등록신청은 부 또는 모 가 하여야 한다.

-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신청은 모가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등록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지방출입 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할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출생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동거하는 친족
-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⑤ 신청의무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생등록신청을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 제11조(비밀유지 등) 출생등록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 ① 출생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 1. 외국인아동의 성명·성별, 국적
  - 2. 출생연월일 및 장소
  -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에 한한다)
  - 4. 출생등록번호
  - 5. 기타 출생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출생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가운데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출생등록번호 부여 및 출생등록부의 기록·보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출생등록부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생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출생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이 법에 따라 출생등록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출생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출생등록부 등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록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 등) ① 외국인아동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혈족(이하 이 조에서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2조에 규정된 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과 시·군·구의 장에게 열람 또는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2. 소송 · 비송 · 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출생등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4.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③ 출생등록증명서는 출생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외국인아동의 성명, 출생등록번호 및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생등록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하려면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과 시·군·구의 장은 제1항 및 제 2항의 청구가 출생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 ⑥ 제12조에 규정된 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출생등록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받은 출생등록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16조(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재외공 관은 출생등록증명서 교부신청의 접수와 교부사무를 처리할 수 있 다.
  - ② 제1항의 재외공관을 정하는 기준과 절차, 출생등록증명서 발급사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출생등록증명서의 수수료) ① 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과 시·군·구의 장에게 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과 시·군·구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와 시·군·구 의 수입으로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

- 의 금액과 그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수수료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출생등록부 기재사항의 정정) ① 출생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 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의 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신청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출생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사건 본인의 출생등록신청 수리지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시·군·구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처리한다.
  - ④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사실을 안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허가 통지서를 첨부하여 출생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⑥ 확정판결에 의하여 출생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⑦ 본 조의 출생등록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렁으로 정한다.
- 제19조(출생등록부의 폐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생등록부를 폐쇄한다.
  - 1.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임이 확인된 경우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 ③ 출생등록부의 관리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부"는 "출생등록부"로, "법원행정처장"은 "법무부장관"으로 본다.
- 제20조(불복절차) ① 출생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시·군·구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 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처분 내용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4장 외국인아동의 사망

- 제21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외국인아동이 사망한 경우, 사망의 신고는 제22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출생

등록번호

-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 제84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22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외국인아동의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하여야 한다.
  - ②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국인관서의 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 제23조(사망신고의 장소) 외국인아동의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할 수 있다.

## 제5장 벌칙

-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 2.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

- 3.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등록신청서류를 열람하거나 등록신청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 4.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7조(준용) 이 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22조,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제49조제1항, 제49조제2항, 제50조, 제51조, 제87조, 제88조, 제91조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은 "시·군·구의 장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본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외국인아동 출생등록신청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출생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아동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출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